[정보공개서 등록번호]20130209 www.myelchikuksu.co.kr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2013-09-1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2025-02-28

[공릉동원조멸치국수]

정 보 공 개 서

[원조멸치국수]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원조멸치국수]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459번길 127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2-6080-6035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31-559-9055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31-511-7126

목차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http://ftc.go.kr/data/hwp/20080306_103723.hwp)
(http://www.ftc.go.kr/laws/laws/laws.jsp?lawDivCd=08)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원조 멸치국수	공릉동원조멸치국수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459번길 127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08.10.07	이 석 환	02-6080-6035	031-559-9055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04-15-8239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공릉동원조멸치국수]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공릉동원조멸치국수	공릉동원조멸치국수
상 호	공릉동원조멸치국수 OO점	공릉동원조멸치국수 OO점
영업표지	30년전통 공릉동 원조 멸치국수	서비스표 출원번호 제2013-0042393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889,950	1,298,736	-408,785	1,020,949	104,848	75,396
2022년	933,139	1,115,913	-182,773	913,269	-17,970	-52,607
2023년	932,084	1,131,698	-199,613	901,565	74,492	21,460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재무상황과 동일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이석환	대표	1993.1~2007.12 (공릉동 원조 멸치국수 체인점)	사원	판매 제조담당
			2008.10~현재	대표	가맹사업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	5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권리내용	등록여부 및 등록신청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 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 사용기간)
원조멸치국수 (서비스표)	상표 (국수등9권)	2013.11.5. 등록 2014.9.29. 출원	제 2013-0042393호	이석환	2034.9.29.
원조멸치국수 (상표권)	서비스표 (식당체인업 등7건)	2013.11.5. 등록 2014.9.29. 출원	제 2013-0073573호	이석환	2034.9.29.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공릉동원조멸치국수] 가맹사업 현황

1. 〔공릉동원조멸치국수〕을 시작한 날: 2008년 10월 1일

2. 〔공릉동원조멸치국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원조 멸치 국수	공릉동원조 멸치국수	이 석 환	2008년 10월~ 현재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459번길 127

3. 〔공릉동원조멸지국수〕 업종

영업표지	업 종	
공릉동원조멸치국수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국수,소스류(멸치육수원액)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공릉동원조멸치국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전체	가맹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02	102		105	105		108	108	
서울		29			29			29	
부산									
대구									
인천		10			9			11	
광주									
대전		7			7			8	
울산									
세종									
경기		47			51			51	
강원		1			1			1	
충북		2			2			2	
충남		4			4			4	
전북									
전남		2			2			2	
경북									
경남									
제주									

5. 최근 3년간 [공릉동원조멸치국수]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03	4		5	0	102
2022	102	8		5	1	105
2023	105	6		3	2	108
[공릉동원조멸치국수]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6. [공릉동원조멸치국수]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공릉동원조멸치국수]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공릉동원조멸치국수]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 가맹점	2023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평균매출 상한		연간평균매출 하한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m²당	상한	면적 3.3m²당	하한	면적 3.3m²당	
전체	108	133,831	10,840					12개월기준
서울	29	128,864	11,211	386,693	21,564	51,222	3,426	12개월기준
부산		해당없음						해당없음
대구		해당없음						해당없음
인천	11	148,444	13,207	259,635	32,984	70,455	7,848	12개월기준
광주		해당없음						해당없음

대전	8	142,179	13,649	210,032	59,549	90,250	6,710	12개월기준
울산		해당없음						해당없음
세종		해당없음						5곳 미만
경기	51	132,093	10,064	312,525	33,346	59,630	3,508	12개월기준
강원	1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북	2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남	4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북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남	2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북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남		해당없음						5곳 미만
제주		해당없음						해당없음

매출액 산정 방식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 × 추정비율(7.5)]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20%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2023년 신규가맹점(6곳)의 2개월이상 영업한 가맹점은 1년치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엿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원조멸치국수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공릉동원조멸치국수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공릉동원조멸치국수]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도	영업중인 가맹점수	평균 영업기간(일)
2023	108	2686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공릉동원조멸치국수]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에 [원조멸치국수]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16]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광고	소계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도농점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1-29	031-553-607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한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원조멸치국수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②	조치일자③	조치내용④
원조멸치국수	-해당사항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공릉동원조멸치국수]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해당 없음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3,630]				
계약금 및 가입비	3,300	계약체결 후 3일이내	반환되지 않음		개점 후에는 해당 가맹비는 소멸되므로 반환되지 않음
지도훈련비	330	교육훈련일 당일 납입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은 받지 않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3,630
가입비	3,300
지도훈련비	33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22,200]	2,220			33㎡ 기준
초도물품	가맹점 사업자가 지정한 업체 또는 가맹본부의 협력업체(미지정)	1,000	100	물품공급 당일	상품 미공급시	
인테리어		12,000	1,200	공사시작 1일전	공사전 계약취소	3.3㎡ 늘어날때마다 1,200추가부담
간판		1,500	150			
주방기구		7,700	770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스설비, 닥트, 전기증설, 냉/난방, 철거공사, 인허가비용, 외부, cctv, 음향, 놀이방시설 등은 해당 비용에서 제외]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점포개발팀 (전화:031-511-7126)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는 당사에 가맹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10]쪽에 나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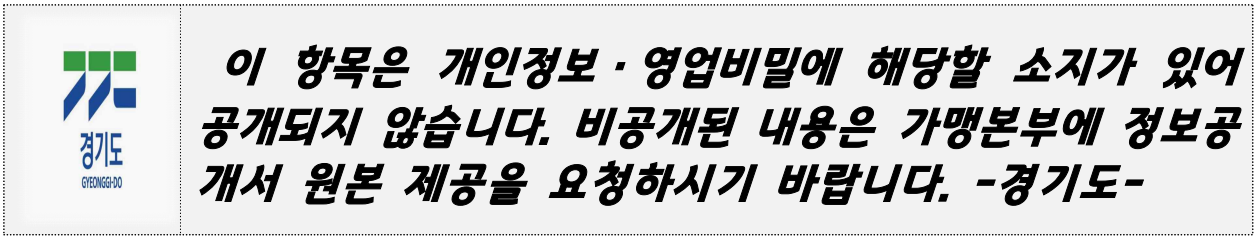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해당없음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실비	다음 월 20일	광고 미시행	광고 시행후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실비		판촉 미시행	판촉 시행후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 미실시	교육실시 후	교육 필요시 지급
간판류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시행업체 *(협력업체)*	실비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시설,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실비	교체,보수 후 5일이내			교체보수필요시 기기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비용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Ⅷ. 1항참조***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해당없음				
지연이자		해당없음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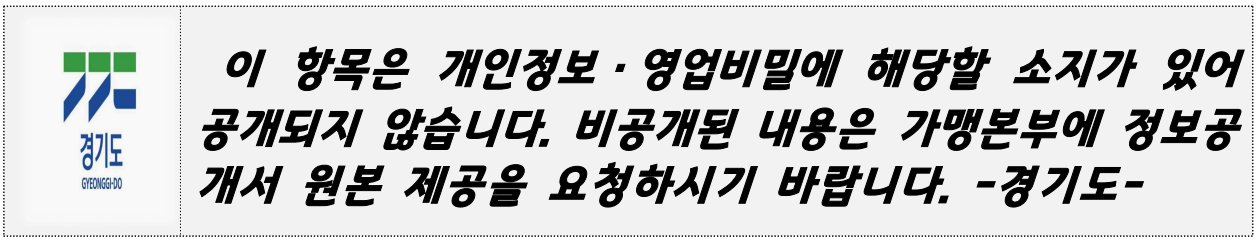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1회/4개월	문의:영업팀 031-511-7126
친절도	담당자 매장 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완료	1회/4개월	문의:영업팀 031-511-7126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4개월	문의:영업팀 031-511-7126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문의:영업팀 031-511-7126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금액 없이 자동갱신한다.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공릉동원조멸치국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공릉동원조멸치국수]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공릉동원조멸치국수]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①]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멸치국수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비빔국수			
칼국수			
손수제비			
김밥			
라면			
만두국			
열무국수(계절메뉴)			
**콩국수(계절메뉴)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원조멸치국수	5,000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지	2023년 12월 기준
비빔국수	6,000		
칼국수	6,000		
손수제비	7,000		
김밥	4,000		
라면	5,000		
만두국(계절메뉴)	7,000		
열무국수(계절메뉴)	7,000		
**콩국수(계절메뉴)	8,0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국수를 판매하는 가맹사업	원조멸치국수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차도상(2차선도로)의 1k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함)
5개구(동대문구,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지역은 **설정 제한 없음(인구과다밀집구역)**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공릉동원조멸치국수'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상기의 기재사항외에는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 사업자의 경영사정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할인행사 및 이벤트	기간중 상시	국수 무상납품	점주 원할시 언제나 지원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공릉동원조멸치국수]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4]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7조 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27조 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27조 2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27조 2항
○ [공릉동원조멸치국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27조 2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7조 2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28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없이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28조 1항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28조 1항
○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또는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28조 1항
○ 가맹점사업자는 서면승인 없이 가맹계약서 전항의 각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맹본부의 승인 하에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즉시 통지한다.	28조 1항 3조 2항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28조 1항
○ 가맹점사업자 또는 직원이 경영지도 규정에의한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28조 1항
○ 가맹본보가 예치가맹금을 요청하는 경우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8조 1항
○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계약존속기간 동안 경업을 하는 경우	28조 1항
○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8조 1항
○ 가맹점 사업자가 품질기준과 영업관리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28조 1항
○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추가하거나 "갑"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8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을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28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상품대금의 지급의무를 2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	28조 1항
○ 가맹본부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할경우	28조 1항 20조 5항
○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7일 이상 점포운영을 방치하는 경우	28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8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8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8조 1항
○ 가맹본보의 사전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28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28조 1항
○ 제2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8조 1항 [26]쪽 참조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경우	28조 1항
○ 기타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28조 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

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8조 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28조 2항
ㅇ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8조 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28조 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8조 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28조 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28조 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28조 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28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02-6080-6035)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앞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공릉동원조멸치국수]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식사류를 제공하면서 국수를 주메뉴로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02-6080-6035)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공릉동원조멸치국수]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제한 없음	주6일 월25일 이상	문의 (031-511-71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1회/4개월	가맹본부	
친절도	담당자 매장 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완료	1회/4개월	가맹본부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4개월	가맹본부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가맹본부	

[관리 항목과 시기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공릉동원조멸치국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60%	광고비 40%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팜플렛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비밀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0.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 “을”이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5조(비밀유지의무), 제16조(경업금지의무) 및 제29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규정을 위반할 경우 “갑”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으로 “을”은 “갑”에게 **금 삼천만원**<부가세별도>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로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소속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20일 내외	30,33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2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인근10개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20~19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19~18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18	
가맹금 예치	- 예치기관(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18~15(3일)	3,30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18~15(10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18~8(10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18~3(15일)	14,000
주방기구 설치	- 주방기구 설치	D-7~3(4일)	7,700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3~2(2일)	330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5,000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관리팀 (02-6080-6035)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관리팀 (02-6080-6035)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공릉동원조멸치국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사유 발생시	
특별교육	영업방침 변경	온라인 및 집단강의	사유 발생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공릉동원조멸치국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7일	33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3일	실비	
특별 교육	1일	실비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031-511-712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1. 3년간 재무상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2. 가맹금예치신청서

<table>
<tr><td colspan="3">가맹금예치신청서</td><td>처리기간
즉시</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상호(가맹점)명</td><td colspan="2"></td></tr>
<tr><td>성명(대표자)</td><td colspan="2"></td></tr>
<tr><td>주소(사무소)</td><td colspan="2">(전화:)</td></tr>
<tr><td rowspan="3">가맹
본부</td><td>상호명(영업표지)</td><td colspan="2"></td></tr>
<tr><td>성명(대표자)</td><td colspan="2"></td></tr>
<tr><td>주소(사무소)</td><td colspan="2">(전화:)</td></tr>
<tr><td colspan="2">예치가맹금</td><td colspan="2">₩ (금 원 정)</td></tr>
<tr><td colspan="2">신청인의 계좌</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가맹본부의 계좌</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td></tr>
</table>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확인서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전화번호	

확인서1: 정보공개서 제공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인

확인서2: 가맹계약서 제공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가맹계약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인

확인서3: 비밀유지확약

본인은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인

가맹점 현황

당사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점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점포예정지역			브랜드명	
No.	상호	대표자명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확인서4: 점포리스트 제공확인서

본인은 위와 같이 가맹점 현황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인